

신한기업뱅킹서비스이용약관

제1조 (적용범위)

- ① 이 약관은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은행”이라 합니다)과 은행이 제공하는 “신한 기업뱅킹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하는 이용기관(이하 “이용자”라 합니다)과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yessign 서비스 이용약관 및 기타 해당 업무의 개별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달리 정함이 없으면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서비스”라 함은 은행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의 일정한 행위에 의하여 계좌이체, 예금 · 신탁계좌의 개설, 대출 및 기타 은행이 정하는 금융거래를 처리하는 것을 총괄하여 지칭합니다.
2. “이용자”란 등록자, 확인자, 승인자 또는 총괄관리자의 각 권한을 가지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하며, 경우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칭합니다.
3.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하여 은행에 개별적인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의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4. “이용자비밀번호”라 함은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대한 처리 시 이용자의 의사확인을 위하여 사용되는 비밀번호로 서비스 이용 시 이용자가 직접 등록하는 비밀번호를 말합니다.
5. “등록자”라 함은 개별 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최초로 등록할 권한이 있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6. “확인자”라 함은 개별 금융거래에 있어서 등록된 거래지시를 승인자의 승인 전에 확인할 권한이 있는 다단계결재상의 이용자를 말합니다.
7. “승인자”라 함은 개별 금융거래에 있어서 보안매체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등록된 거래지시를 승인하여 거래지시를 완성할 권한이 있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8. “총괄관리자”라 함은 개별 금융거래에 있어서 등록자, 승인자 및 확인자를 지정할 권한이 있는 다단계결재상의 이용자를 말합니다.
9. “보안매체”라 함은 은행이 서비스 계약 시에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거래안전을 위한 장치로서,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한 접근매체 중에서 서비스 이용 시 이용자 본인확인을 위해 사용되는 보안 카드 또는 OTP카드(1회용비밀번호생성기) 등을 말합니다.
10. “보안매체 비밀번호”라 함은 서비스상 정당한 처리 지시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보안매체에서 발생한 번호를 말합니다.
11. “공인인증서”라 함은 이용자 본인확인을 위하여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적 정보를 말합니다.
12. “단독결재”라 함은 등록자의 권한을 겸하는 승인자 1인의 거래지시에 의하여 거래지시가 완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13. “다단계결재”라 함은 등록자가 거래지시를 등록하고 승인자의 승인으로 거래지시가 완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14. “스마트기기”란 스마트폰, 태블릿PC등과 같이 유무선네트워크, 통신망 등을 통해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합니다.
15. “비대면실명확인”이라 함은 은행이 이용자 본인을 확인할 때 비대면 방식으로 실명확인 하는 것을 말합니다.
16. “은행이 정한 인증서”라 함은 “공인인증서” 외 전자서명생성정보가 이용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합니다.

제3조 (전자적 장치)

- ① 이용자는 다음의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 인터넷뱅킹 : 컴퓨터, 휴대폰, TV, PDA, 스마트기기 등
 - 나. 폰뱅킹 : 전화, 휴대폰 등
- ② 이용자는 서비스 신청 시 이용할 전자적 장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서비스의 종류)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을 통한 각종 조회, 이체, 신규/해지, 대출, 외환, 사고신고, 공과금납부, 자금집금, 자금배분, 본지사자금관리, 전자결제 등이며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은 전자적 장치를 통해 게시합니다.

제5조 (계약의 성립)

- ①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이용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하며, 은행이 이에 대하여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② 서비스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금융거래 중에서 펌뱅킹서비스, 가상계좌서비스, InsideBank (Lite 및 ERP포함), 글로벌 CMS 등 은행이 지정하는 일부 금융거래는 별도로 은행과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6조 (결재 단계)

- ① 이용자는 단독결재와 다단계결재 중 결재 단계를 선택하여야 하며, 지정된 결재 단계는 이용자가 서면으로 은행에 신청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폰뱅킹은 단독결재만 가능합니다.
- ② 이용자가 다단계결재를 선택한 경우에는 총괄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이용신청서에 총괄관리자에 의하여 “승인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를 지정하거나 서비스에서 직접 총괄관리자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

③ 이용자가 다단계결재를 선택한 경우에는 서비스에서 총괄관리자가 개별 금융거래에서의 이용자의 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④ 은행은 이용자가 이용신청서에 의하여 총괄관리자로 지정한 자와 “승인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로 지정한 자에게 보안매체를 지급하거나 승인자의 경우 이용신청서에서 지정한 이용 수량만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이용자의 지정 · 변경 및 권한설정)

① 총괄관리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등록자, 확인자, 승인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총괄관리자는 등록자가 등록할 수 있는 거래지시의 범위를 정하여야 합니다.

③ 총괄관리자는 이용자가 서면으로 “승인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를 지정한 경우 지정한 범위 내에서 승인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④ 총괄관리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개별 금융거래에서의 이용자 등의 업무권한(결재 참여여부, 결재순서, 이체한도 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⑤ “승인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와 총괄관리자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은행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서비스를 이용하여 지정한 승인자의 변경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⑥ 이용자가 총괄관리자를 변경한 경우에도 기존의 총괄관리자에 의한 이용자의 지정 · 변경은 변경 후 총괄관리자가 달리 지정 · 변경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유지합니다.

제8조 (이용자의 확인)

은행은 다음 각 호의 내용 중 은행이 요구하는 해당 항목을 이용자가 입력했을 때 동 내용이 은행에 등록된 자료와 일치할 경우 이용자를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본인으로 간주하고 요청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폰뱅킹 : 사업자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이용자비밀번호, 보안매체비밀번호
2. 인터넷뱅킹 : 공인인증서 또는 은행이 정한 인증서, 사업자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이용자비밀번호, 보안매체비밀번호

제9조 (이체 거래 한도)

①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별표1]의 최고한도범위 내에서 1회 이체한도, 1일 이체한도 (이하 “통합이체한도”라 합니다)를 정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가 외국환거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외화이체한도를 정하여야 하며 폰뱅킹을 이용하는 경우에 폰뱅킹이체한도를 정하여야 합니다.

③ 외화이체한도와 폰뱅킹이체한도는 통합이체한도 범위 내에서 별도로 운영합니다.

④ 이용자는 제1항에서 지정된 통합이체한도 내에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단, 예금신규, 대출상환, 예금

의 해지, 은행의 이자지급 등으로 발생하는 동일인 명의의 거래금액 및 은행에서 지정한 일부 서비스는 거래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10조 (계좌이체 이용계좌)

- ① 이용자는 자신의 계좌이체 거래지시로 자금이 출금되는 계좌를 은행에 서면으로 지정하거나 비대면 실명확인 후 비대면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단, 사전에 인터넷 출금계좌 추가 동의를 영업점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서비스내에서 출금계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② 이용자는 자신의 계좌이체 거래지시로 자금이 입금되는 계좌를 은행에 서면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지정된 입금계좌로의 계좌이체만 가능하고,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 거래지시에서 정하는 계좌에 입금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거래지시의 일반적 처리기준)

- ① 은행은 거래지시에 포함된 계좌번호와 계좌비밀번호, 이용자비밀번호 및 보안매체비밀번호가 은행에 신고 또는 등록된 것과 대조하여 일치하는 경우에만 거래지시에 따라 처리합니다.
- ② 확인자 또는 승인자가 복수로 지정된 경우에는 총괄관리자가 각 이용자의 업무권한을 지정한대로 처리합니다.
- ③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처리 완료된 거래지시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제12조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의 처리기준)

- ①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는 은행이 거래지시의 내용을 확인한 때에 거래가 성립합니다.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를 위해 필요한 이체자금은 이체 지정일의 은행에서 정한 이체처리 시간 전에 출금계좌에 입금되어야 하며, 이체시점에 출금계좌의 지불가능잔액이 이용자가 거래 지시한 금액 이상일 때 처리합니다.
- ② 이체실행은 1회의 실행으로 하고 이체불능 건에 대한 재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 ③ 이체지정일에 복수의 예약이체 의뢰가 있을 때에는 은행은 접수 받은 순서에 따라 처리합니다.
- ④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의 취소는 은행이 정한 시간 전까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예금 및 신탁 계좌의 개설 및 해지)

-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통해 본인명의의 예금(이하 “근거계좌”라 합니다)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예금 및 신탁계좌(이하 “연결계좌”라 합니다)를 신규 개설할 수 있습니다.
- ② 연결계좌는 만기일에 자동으로 해지되어 근거계좌로 입금됩니다. 단, 담보제공 되어있거나 납입지연 등으로 자동해지 시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지되지 않습니다.
- ③ 서비스를 통해 신규 개설한 예금 및 신탁계좌는 서비스를 통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④ 연결계좌의 적립금 납입 및 이자지급은 자동이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 서면 또는 전자적 수단으로 자동이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 ⑤ 서비스를 통해 신규 개설한 예금 및 신탁계좌는 인감 또는 서명신고를 생략하고 통장발급을 하지 않으며, 통장발급을 원할 경우는 영업점을 방문하여 본인확인절차를 마친 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단, 영업점을 통해 통장을 발행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통한 중도해지 및 만기 시 자동해지 처리되지 않습니다.

제14조 (대출)

- ①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해 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후 가능합니다.
- ② 제1항의 약정은 서류 없이 서비스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③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제8조의 이용자의 확인을 통하여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여 거래지시의 내용대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한 내용대로 약정이 체결되는 것으로 봅니다.

제15조 (자금집금)

- ① 자금집금 업무는 이용자가 지정한 시간에 지정된 자계좌의 지급가능잔액(대출한도 제외)한도 내에서 요청한 자금을 출금하여 이용자가 지정한 모계좌로 집금해주는 서비스입니다.
- ② 제1항의 자계좌 및 모계좌는 은행 영업점에서 사전에 서면으로 신청된 계좌에 한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자금배분)

- ① 자금배분 업무는 이용자가 지정한 시간에 지정된 모계좌의 지급가능잔액한도(대출한도 포함)내에서 이용자가 지정한 자계좌로 입금해주는 서비스입니다.
- ② 다수의 자계좌로 배분할 경우 총 배분 요청 금액이 모계좌의 지급가능 잔액한도를 초과할 경우 요청 건별로 모계좌의 지급가능 잔액 한도 내에서 배분합니다.
- ③ 제1항의 모계좌는 은행 영업점에서 사전에 서면으로 신청된 계좌에 한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본지사자금관리)

- ① 본지사자금관리업무는 이용자가 제3자(이하 “자회사”라 합니다)의 동의를 받아 자회사의 예금계좌 및 대출계좌에 대한 이체, 조회 등을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 ② 이용자는 자회사로부터 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계좌 및 업무 등에 대한 위임 및 이용동의서를 받아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 ③ 자회사의 범위 : 사업자등록증상 본사 및 자회사의 법인등록번호가 동일한 경우

제18조 (서비스의 제한과 재개)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각자 입력한 계좌비밀번호, 이용자비밀번호 또는 보안매체비밀번호가 각 5회 연속하여 은행에 신고 또는 등록된 것과 다르게 입력된 경우. 단, OTP카드는 OTP카드에서 생성되는 비밀번호가 전 금융기관을 통합하여 10회 이상 연속하여 다르게 입력된 경우
2. 서비스를 통하여 12개월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3. 은행 영업시간 종료 후 및 영업일이 아닌 경우
4. 사고신고 접수된 서비스. 단, 사고신고 되지 않은 서비스는 이용 가능
5. 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은행에서 정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② 서비스가 제한된 경우 이용자는 은행을 방문하여 실명확인절차를 거치거나, 비대면실명확인을 거친 후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를 이용하여 지정한 등록자, 확인자 및 승인자가 이용자비밀번호 또는 보안매체비밀번호를 전항1호에서 정한 횟수 이상 연속하여 은행에 신고 또는 등록된 것과 다르게 입력하여 서비스 이용이 중지된 경우에는 총괄관리자가 서비스를 통하여 이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수수료)

①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은행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별표2]와 같습니다.

② 수수료의 납부 방법

수수료는 납부방식에 따라 서비스 이용과 동시에 징구하는 즉시납부방식 수수료와 서비스 이용 후 일정기간 경과하여 징구하는 후취납부방식 수수료로 구분됩니다.

③ 수수료의 변경 및 유효기간

1. 이용자와 은행은 [별표2]의 수수료에도 불구하고 협의하여 수수료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제1호에서 정한 수수료는 최대 익년도 6월말 범위 이내까지 적용하기로 하며, 그 기간이 종료된 익일부터는 [별표2]의 수수료로 자동 환원됩니다.

④ 수수료의 납부

1. 즉시납부방식 수수료의 경우 서비스 이용과 동시에 이용자의 출금계좌에서 자동출금 합니다.
2. 후취납부방식 수수료의 경우 은행은 매월 1일~말일까지 발생하는 수수료를 익월 10일(은행의 비영업일(법정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에 이용자가 지정한 수수료 결제계좌에서 출금합니다.
3. 은행은 수수료의 출금을 위하여 별도의 예금청구서, 통장 등의 제시 없이 출금하여 수수료에 충당합니다. 이때, 이용자의 수수료 당상 금원의 입금 의사표시 여부에 불문하고 지정한 계좌 잔액에 대하여 은행은 수수료 출금을 위한 자금으로 인정하기로 합니다.

4. 후취납부방식 수수료의 경우 이용자는 전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로 이 계약이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 효력상실 시점까지 발생한 미결제 수수료를 협력 상실일에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기로 하며 은행은 전항의 절차와 동일하게 출금하기로 합니다. 단, 이용자의 수수료가 부족할 경우 은행은 별도로 청구하고 이용자는 즉시 이를 입금하여야 하며, 만약 이용자가 부족한 수수료를 입금하지 않으면 이용자의 다른 계좌에 예치된 자금에서 예금청구서, 통장 등의 제시 없이 출금하여 충당할 수 있기도 합니다.
5. [별표2]와 같이 월 최저수수료를 정한 경우 산출 수수료가 월 최저수수료 이하일 때는 월 최저수수료 상당액을 수수료로 납부합니다. 단, 과금 대상기간 동안 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제20조 (분실신고 및 제변경)

- ① 보안매체의 분실, 도난 및 각종 비밀번호 누설 등 사고 발생시에는 즉시 거래 영업점에 서면 또는 서비스를 통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익영업일까지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② 이용자가 은행에 신고한 출금계좌 또는 입금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은행에 신청하거나, 비대면실명확인을 거친 후 비대면으로 신청하여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습니다.
- ③ 이용자가 은행에 신고한 이체한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실명확인, 본인인증 등 은행이 정한 소정의 절차를 마친 후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다단계결재로 사용하는 경우, 총괄관리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지정한 등록자, 확인자 및 승인자의 한도를 은행에 신고한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통하여도 가능합니다.
- ④ 이용자가 이용자비밀번호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비스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거래내용의 확인)

이용자는 거래지시와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통신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처리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접속하여 정상처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22조 (계약의 해지 및 해지사유)

- ① 은행은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보 후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으며, 은행이 정한 기간내에 중지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은행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경우
2. 이용자가 본 서비스를 범죄수익의 은닉, 자금세탁, 조세포탈 등 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3. 기업이 사전 서면통보 없이 3개월 이상 해당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② 이용자는 은행에 대하여 서면 또는 서비스에 의한 의사표시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면책)

본 약관에 의한 서비스와 관련한 은행의 손실부담 및 면책은 은행의 전자금융거래약관 제20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4조 (관할법원)

본 계약상의 해석이나 이해에 있어 상호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25조 (권리, 의무의 양도금지)

본 약관의 각 당사자는 이 약관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다른 당사자들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부 칙

1. 이 약관은 2020년 7월 17일부터 시행합니다.

[별표1] 이체 최고한도 범위

구 분	1일 이체한도	1회 이체한도
인터넷뱅킹	50억원	5억원
폰뱅킹	5억원	1억원

※ 기타 세부기준은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별표2]수수료

서비스 종류	징수방법	산출기준	수수료금액	비고
자금이체수수료	즉시 또는 후취	처리건당	당행 : 무료 타행 : 500원	5억원 초과시 5억원당
급여이체수수료	즉시 또는 후취	처리건당	당행 : 무료 타행 : 500원	5억원 초과시 5억원당
자금집금수수료 (당행)	후취	처리건당	300원	최저수수료 월 30,000원
자금배분수수료 (당행)	후취	처리건당	100원	최저수수료 월 30,000원
자금배분수수료 (타행)	후취	처리건당	500원 (5억원 초과시 5억원당 500원)	최저수수료 월 30,000원
본지사자금관리	후취	타행이체 처리건당	500원 (5억원 초과시 5억원당 500원)	최저수수료 월 100,000원

※ 기타 세부기준은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